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1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병가의 종류(일반 병가)

» 일수 : 연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병가의 종류(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병가 일수의 계산

» 1.1. ~ 12.31.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 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병가와 진단서

- » 7일 이상 연속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같음할 수 있음.
  -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미산입.
  -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 신청 시 학교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 2018.12.18.>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관계

»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일반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질병휴직 복직 후 일반병가 사용

- »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 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될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병가와 학교장의 허가
  - » 병가의 기간은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학교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Q & A

**Q:**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 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토·공휴일의 휴가일수 산입 여부는?

**A:**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 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해야 함.  
(4일 + 토·일 2일 + 25일 = 31일)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Q & A

**Q: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A: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해야 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Q & A

**Q: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A: 실제 연속된 병가 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 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이때 해당 소속 교원의 병가 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 일수 계산이 가능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Q & A

**Q:** 현재 방학 중인 교사가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방학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를 신청하였는데 병가 처리를 방학 날 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학 후부터 신청해도 되는지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종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 사유일 경우에는 휴가 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공무상 병가 운영 유의 사항 1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 단, 공무상 병가 기간은 학교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 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공무상 병가 운영 유의 사항 2

»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 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 승인 불가.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공무상 병가 운영 유의 사항 3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 허가 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
- ※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 하지 않거나 일반 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 가능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공무상 병가 운영 유의 사항 4

» 일반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질병 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 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 가능.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

(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공무상 질병 1

»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골근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공무상 질병 2

»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공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정신질환:**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공무원의 고의, 사적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장난, 정상적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 사적 친목 행사·취미 활동·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외.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휴식 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귀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중 발생한 사고 등.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공가

### ☑ 공가의 사유 1

-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동원훈련 참가
- » 공무와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국가 기관에 소환 된 때
-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 할 때
-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 원격지간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 할 때
- » 건강진단·건강검진·결핵 검진 받을 때
- » 헌혈 참가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공가

### ☑ 공가의 사유 2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 (국외 특별연수자 선발) 응시.
- » 올림픽 ·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참여.
- » 천재지변 · 교통 차단 · 기타 사유로 출근 불가.
- » 교원노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교섭관련 협의·대의원회(연1회 한정) 참석.
- » 교원단체의 교섭 및 협의·대의원회(연1회 한정) 참석.
- »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오염지역 및 오염 인근 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 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관련예규 개정 2018.12.18.>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공가

### ☑ 공가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 공가의 허가 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 왕복 소요 일수 가산 가능.
- » 전보 시 업무 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 가능.
- » 건강검진의 확진 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 2018.12.18.>
- » 행사 참가는 학교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공가

### ☑ 공가의 사례

-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 » 징계·소청·행정 소송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 민사 소송 당사자로서 출석은 연가 사용.  
(업무 관련 참고인·증인·감정인으로 출석은 공가)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특별휴가의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p>-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b>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b>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b>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b>를 부여할 수 있다.</p> <p>-<b>교육감</b>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b>육아 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b>할 수 있다.</p> <p>-위 항 외의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p>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특별휴가의 종류

- 경조사 휴가
- 출산휴가
- 여성보건휴가
- 육아시간
- 수업휴가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 시술 휴가
- 모성보호시간
- 자녀돌봄휴가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b>10</b>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b>3</b>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b>3</b>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경조사 휴가의 유의점

- »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 기관의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입양 외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 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 가산 가능.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경조사 휴가의 유의점

-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이 경우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 사용 가능.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경조사 휴가의 사례

####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경조사 휴가의 사례

####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4】

2018년 6월9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4일(수) 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8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이 초과되는 7월9일 부터는 해당 휴가 사용 불가.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Q & A

**Q:**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의 기산은?

**A:**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출산휴가 일수

- » 임신·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 90일**.
-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 가능.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게 함)
-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출산휴가의 신청

-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 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유산·사산휴가 1

-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임신 기간이
  -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60일까지
  - 28주 이상인 경우 : 90일까지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은 휴가 부여 불가.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유산·사산휴가 2

-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 기간이 단축됨.
- » 출산 및 유산 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 허가 가능.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Q & A

**Q: 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는?**

**A: 휴직 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다만, 휴직에서 복직한 때에는 출산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휴가 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Q & A

**Q: 출산휴가 신청 시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출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난임치료 시술 휴가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 1일 휴가 사용 가능.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 추가 사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 2018.12.18.>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여성 보건 휴가

» 여성 교원은 매 생리기.임신 시 정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 가능.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 휴가는 무급)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모성보호시간의 대상과 승인
  - » 대상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 » 시간 :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 » 인력운영상황,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학교장은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보장)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 모성보호시간과 연가 처리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시) 1일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I. 교원의 복무

## 07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특별휴가 1

###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  
(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
- »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 시간 중 모두 가능.
-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